

지방세법 수정신고 제도 개선 검토

양 인 병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1. 국세와 지방세 수정신고제도의 비교

현재 국세의 수정신고 관련 개념체계에 따르면 납세자가 최초 신고 시 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납세자가 기 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정정하는 신고를 “수정신고”라 하고 반대로 정당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대하게 신고한 경우에 납세자가 과대 신고한 세액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수정신고와는 별개로 “경정청구”라 하여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 되어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자기보정력을 가지고 기 신고한 세액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소하게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추후 국가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신고함으로써 가산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반면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최초 납세의무자가 과대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다 신고·납부세액의 환급을 결정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자 구제목적의 청구 절차로서 신고납부세제의 운영을 위하여 수정신고제도와 함께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납세자 구제제도임.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세액의 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자기확정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최초 신고·납부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세액과 차이가 있다면 국가가 이를 결정하여 부과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수정권을 가지고 이를 수정하도록 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인 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자가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임.

현행 지방세법도 수정신고절차와 경정청구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세와 같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조문(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그 성격과 내용을 무차별하게 “수정신고”라고 칭함. 또한 관련 법체계 및 제도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많은 차이가 있음.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추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제도를 국세기본법상 명문화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취득세에만 “기한 후 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취득세를 제외한 여타의 신고납부 지방세목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임.

지금부터 국세와 지방세법 간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1)수정신고제도 2)경정청구제도 3)기한 후 신고제도 순으로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본 후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논하여 보도록 하겠음.

(1) 수정신고 제도 비교

구 분	국 세	지 방 세
근거조문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편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의 제45조[수정신고]에 명시함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총칙”편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제71조[수정신고]에 명시함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신고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고기한	<input type="checkbox"/> 부과제척 기한 내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input type="checkbox"/> 다음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차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가산세 감면조항	<input type="checkbox"/>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와 동시에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함	<input type="checkbox"/> 법에서 명시한 특정 신고사유에 한하여 신고기한 내(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납부가산세를 면제함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다고 할지라도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2) 경정청구 제도 비교

구 분	국 세	지 방 세
근거조문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편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의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에 명시함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에 따라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세액의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제71조에서 명시한 신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단순 신고오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총칙”편 제13절 “이의신청 등”의 법 제72조 [청구대상]에 근거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도록 함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신고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미달한 때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상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단순 신고오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총칙”편 제13절 “이의신청 등”의 법 제72조[청구대상]에 근거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함
신고기한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1) 소송의 확정판결이 된 때 2)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때 4) 결정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장부의 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input type="checkbox"/>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다음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input type="checkbox"/> 상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단순 신고오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청구대상]에 근거하여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함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조항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편에서 다룸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총칙”의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편에서 다룸(지방세법은 환급금을 ‘환부금’으로 환급가산금을 ‘환부이자’라 칭함)

구 분	국 세	지 방 세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을 지급 시 기본적으로 법정 기산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국세환급가 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에 따라 제한적인 열거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부금은 지급하나 환부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제71조[수정신고]가 아닌 제72조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경정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산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환 부이자를 받을 수 있음

(3) 기한 후 신고 제도 비교

구 분	국 세	지 방 세
근거조문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편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의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에 명시함	<input type="checkbox"/> 취득세편 제121조의 2 [기한 후 신고]에 명시함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한	<input type="checkbox"/>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input type="checkbox"/>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받기 전까지
가산세 감면조항	<input type="checkbox"/>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제47조의 2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함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함

2. 현행 지방세 수정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관련 법조문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념 구분의 불분명

- 수정신고는 기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당초의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도 당연히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정부의 경정이 없어도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는 당연히 증액되는 효력이 있음.

- 반면에 경정청구는 기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로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기존의 신고세액을 정정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만을 지을 뿐이다.
- 만일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 및 행정쟁송을 통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행 지방세법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조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조문에 둘 간의 개념 구분 없이 다루고 있으나 법적인 성격과 효력이 다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법조문은 별개로 구성하여야 함이 타당함.

②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제한함

- 수정신고는 최초 과소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그 사유를 일부 항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기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하게 신고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정신고와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그 사유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행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한 후에 1)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그 수정신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납세자가 신고 당시 계산의 착오 등을 사유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현 지방세법상의 조문만으로는 기 신고분의 정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 다시 말해 지방세법은 현재 신고·납부세목을 운영하면서도 신고한 이후 납세자의 자기수정절차도 적절히 구비되지 않은 실정임.

- 결론적으로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추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증액시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충분히 사실 파악 후 수정신고를 할 것인 바, 그 수정신고 사유를 일부 국한된 사유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 최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경정사유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합당할 것임. 물론 경정청구 후에 그 청구의 정당성은 경정을 청구하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시하여야 할 것임.

③ 수정신고절차와 불복절차의 개념을 혼용

- 현행 지방세법은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는 대신 이의신청 등의 청구대상 법 제72조에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수정신고절차 대신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음.
-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절차는 납세의무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절차와는 단계적인 구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문체계가 이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와 불복절차간의 논리적이거나 단계적인 연계성이 결여된 체계로서 납세의무자 및 세무업무 수행자가 현행 법조문만을 보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결론적으로 지방세법 제72조에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문장은 삭제되어야 하고 대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복절차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경정청구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④ 개별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공히 적용하는 기한 후 신고 조항의 부재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 스스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기한 후 신고의 조문이 명문화되어 있음.

- 그러나 지방세법은 총칙 편에서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방세법 중 유일하게 취득세편에서만 “기한 후 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취득세를 제외한 여타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임.
- 결론적으로 신고납부 지방세목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취득세와 같은 개별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법 총칙 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3. 관련규정의 개정세법 시안

가. 현행 수정신고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p>제71조(수정신고)</p> <p>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p> <p>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p> <p>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폐 지〉</p>

현 행	개 정
<p>제72조(청구대상)</p> <p>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p>	<p>제 XX 조(청구대상)</p> <p>①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p>

나.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 XX 조(수정신고)</p> <p>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p>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 XX 조(경정 등의 청구)</p> <p>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p>

현 행	개 정
	<p>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p>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XX 조(기한 후 신고)</p> <p>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에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별첨 1 지방세법 수정신고 관련 법조문

■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 ‘총칙’에 명시

-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수정신고】 - ‘총칙’에 명시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총칙’에 명시

-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총칙’에 명시

-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내용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내용생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4조 【심사청구】 - ‘총칙’에 명시

-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내용생략)”] 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 [“(내용생략)”] 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45조 【과오납금의 총당과 양도】 - ‘총칙’에 명시

-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총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소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46조 【환부이자계산】 - ‘총칙’에 명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총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총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 지방세법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 ‘총칙’에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 1의 2. 제19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 지방세 제121조의 2 【기한 후 신고】 - ‘취득세편’에 명시

-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법 제177조의 3 【수정신고납부】 - ‘주민세편’에 명시

-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 2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